

분할납 방식

레오10호 소액투자전문펀드 규약

2018. 03. 15.

업무집행조합원
주식회사 레오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약은 창업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재산의 배분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창업투자회사등의 등록및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간에 합의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① 본 조합의 명칭은 「레오10호 소액투자전문펀드」(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LEO Fund 10」이라 한다.
② 본 조합의 사무소는 업무집행조합원인 (주)레오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의 본점에 둔다.

제3조 (조합의 성립 시기) 본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날로부터 성립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출자”라 함은 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 “출자지분”이라 함은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대하여 갖는 공동소유 비율을 말한다.
3. “출자증서”라 함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증명하고 그 권리행사를 위한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서로서, 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발행·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4. “조합원”이라 함은 조합에 출자하고 그 출자지분에 따라 출자증서를 교부받은 자로서, 조합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5. “출자약정액”이라 함은 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조합원이 출자이행을 약속한 총액을 말하며 설립출자금과 추가출자금으로 구성 된다.
6. “설립출자금”이라 함은 각 조합원의 출자약정액 중 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결성시에 납입한 출자금액을 말한다.

7. “추가출자금”이라 함은 각 조합원의 출자약정액에서 설립출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조합 설립 후에 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될 금액을 말한다.
8. “납입출자금”이라 함은 각 조합원이 본 규약상 출자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조합에 실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9. “조합재산”이라 함은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한 출자금 및 이를 운용하여 취득한 권리, 현금 및 기타 재산으로서 조합에 귀속되는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10. “투자업체”라 함은 법에 따라 조합에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11. “투자유가증권”이라 함은 투자업체가 발행한 주권과 사채권, 기타 유가증권으로서 조합이 투자한 대가로 취득한 것을 말한다.
12. “투자수익”이라 함은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였거나 분배할 금액이 납입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13. “내부수익률(IRR)”이라 함은 조합원 출자 등으로 조합이 운용하는 금액의 현재가치가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등으로 조합원이 회수하는 금액의 현재가치와 동일하게 되는 할인율을 말한다.
14. “기준수익률”이라 함은 제28조에 의한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내부수익률(IRR)을 말한다.
15. “회계감사인”이라 함은 조합재산 운용상황에 대한 감사 및 결산보고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조합원 총회에서 선임한 회계법인을 말한다.
16. “수탁회사”라 함은 법 제22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조합재산을 보호·예수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보관·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17. “대표 펀드매니저”라 함은 영 제9조 제7항에 의한 전문인력으로서 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지고 있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18. “일반결의”라 함은 납입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 납입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조합원의 찬성을 얻는 것을 말한다.
19. “특별결의”라 함은 납입출자금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조합원의 찬성을 얻는 것을 말한다.
20.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21. “특별조합원”이라 함은 본 규약상 유한책임조합원 중 한국모태펀드를 말한다.
22. “투자기간”이라 함은 제3조의 조합이 성립한 날로부터 4년까지를 말한다.

23. “업무집행조합원의 핵심운용인력”이라 함은 대표펀드매니저 신문철을 포함한 한석우, 허인선으로 한다.
24. “겸직”이라 함은 핵심운용인력이 조합의 업무 수행 이외에 타 법인으로 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 받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25. “업무 협약”이라 함은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간에 규약 이외에 체결한 모든 종류의 계약을 말한다.
26. “창업초기기업”이라 함은 최초 투자 당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중 업력 3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재창업자 포함) 또는 창업자로서 매출액 대비 R&D비율이 5%이상이며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중소·벤처기업을 말한다.
27. “투자잔액”이라 함은 투자 집행이 되었으나 회수되지 않은 투자원금에서 감액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8.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제5조 (관계법령의 준수) 조합의 결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규정(이하 “근거법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규약의 변경) 본 규약은 유한책임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발의에 따라 조합원 총회의 전원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소송의 관할) 본 규약에 관한 분쟁 및 조합에 관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2 장 출 자

제8조 (출자) ① 출자 1좌의 금액은 금 일천만원(₩10,000,000-)정도로 한다.
 ② 조합 성립시 출자약정액은 금 일백오십일억원(₩15,100,000,000-)정도로 한다.

③ 출자약정액은 설립출자금과 추가출자금으로 구성되며, 설립출자금 총액은 금융실업사천만원(₩6,040,000,000-)정도로 하고, 추가출자금 총액은 금구실업사천만원(₩9,060,000,000-)정도로 한다.

④ 추가출자금은 기존 납입된 출자금의 70% 이상이 소진(투자누계액 기준)되고, 제3조의 조합이 성립한 날로부터 4년(“투자기간”)의 범위 내에서 2회 동안 균등한 금액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의 요청에 의해 분할 납입하여야 한다. 투자기간 이후부터는 각 조합원의 출자이행의무는 면제된다.

제9조 (출자금 구성) 출자자별 출자금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조합원명	출자약정액	설립출자금	추가출자금	출자비율
업무집행조합원	(주)레오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	400	160	240	2.65%
유한책임조합원	(주)넥스트 엔터테인먼트월드	1,500	600	900	9.93%
	(주)로엔 엔터테인먼트	1,500	600	900	9.93%
	메가박스(주)	1,200	480	720	7.95%
	(재)서울산업진흥원	500	200	300	3.31%
	소 계	4,700	1,880	2,820	31.12%
특별조합원	한국모태펀드	10,000	4,000	6,000	66.23%
계		15,100	6,040	9,060	100.0%

제10조 (출자의무의 이행 및 불이행시의 지연배상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제9조에 따른 조합원의 설립출자금 출자의무 이행을 위하여 결성총회 이전에 각 조합원에게 납입 일시·장소 및 금액을 명기하여 서면으로써, 납입일 이전까지 각 조합원에게 출자이행의 통지(출자이행통지)를 하며, 조합원은 그 통지에 따라 제8조 제3항의 설립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제9조에 따른 추가출자금에 대한 출자의무 이행을 위하여 추가출자금 납입요청일(이하 “지정납입일”)이라 한다.)의 10영업일 이전까지 각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출자이행 통지를 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은 그 통지에 따라 추가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

원이 제34조 제3항 제1호, 제2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출자금에 대한 출자의무 이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총회 특별결의(업무집행조합원 및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지 않는다)에 따라 해당기간 중에 출자이행여부를 결정한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유한책임조합원이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의 다른 사유로 추가 출자금 전부 또는 일부 납입을 지연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지연에 따른 배상 또는 불이행에 따른 지연양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지정납입일 익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납입일까지 연 15%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토록 한다. 이 경우 당해 조합원이 납입한 이자는 조합의 출자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납입을 지연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들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해당 지연이자를 청산시 분배받는다.
2. 지정납입일 익일부터 30일 이내에 추가출자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하 “납입의무 불이행 조합원”이라 한다)은 조합원총회 별도 의결 없이 자연탈퇴 되며, 납입의무 불이행 조합원의 기 납입한 출자금액에 따른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a) 기 납입한 출자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b) 지정납입일 익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제41조 등에 따라 평가한 조합자산 평가액에서 납입의무 불이행 조합원의 출자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은 금액(이하 “우선매수가”라 한다)을 매수대금으로 하여 납입을 지체하지 않은 다른 조합원들이 각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지분의 양도 또는 우선매수 절차에 관하여는 본 규약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유한책임조합원이 우선매수를 원치 않을 경우 우선매수가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매수하거나 다른 신규 출자자를 모집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본 호에서 정한 절차는 지정납입일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3. 업무집행조합원이 매수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신규 출자자가 매수하지 아니한 잔여 출자지분이 있을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해당 지분에 대한 출자금 환급을 본 조합 청산시까지 유보한다. 청산 시 업무집행조합원은 납입의무 불이행 조합원에게 해당 출자지분 평가액의 50%(단, 해당 출자지분 평가액의 50%가 해당 출자지분의 우선매수가를 초과할 경우 해당 출자지분의 우선매수가로 한다.)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

을 지급하고, 잔여 평가액은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율에 따라 분배한다. 납입의무 불이행조합원의 기 납입출자금과 우선매수가 및 제3호 출자지분 평가액의 50%와 차액 상당액은 납입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약별로 한다.

4. 본 항 제2호에 따른 해당 출자지분 양도시 납입의무 불이행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납입하여야 할 지연이자(납입의무 불이행 출자금에 대해 지정 납입일 익일부터 30일까지 연 15%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그 출자지분을 우선매수권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은 우선매수가에서 지연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납입의무 불이행 조합원에게 지급하며 지연이자는 조합에 납입토록 한다.
5. 본 항 제2호에 의하여 해당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조합원은 해당 출자지분에 대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 ④ 출자는 내국통화로 하되,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
 - ⑤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의 출자금 납입지연을 이유로 자기 출자금 납입을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출자자가 추가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당 지정납입일 이전에 납입하거나 지정납입일 당일에 그 조합원의 의무출자비율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은 조합에 귀속하고, 출자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출자금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반환하기로 한다.

제11조 (출자증서의 교부)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를 이행한 조합원에 대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날 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기명날인한 출자증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조합원에 대한 출자증서 교부는 업무집행조합원이 특별조합원의 수탁회사에게 직접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출자증서 번호
 2. 조합원의 성명·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3. 조합의 출자 약정액 및 약정 총 출자좌수
 4. 조합원의 납입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 ② 출자증서는 기명식으로 하고, 이 규약에서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 또는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 ③ 출자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조합원과 조합원총회

제12조 (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에 1좌 이상을 출자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단, 외국인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 ② 본 규약이 어떤 조합원과의 관계에서 무효로 되거나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본 규약은 그 이외 다른 조합원과의 관계에서는 유효하고 이들 조합원은 출자의무를 포함한 본 규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진다.
- ③ 조합원 지위 양도 및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결성시 최초로 소정의 가입절차를 밟은 자 이외에는 새로이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 (조합원의 구성)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집행조합원 : (주)레오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2. 유한책임조합원 :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주)로엔엔터테인먼트메가박스(주), (재)서울산업진흥원
3. 특별조합원 : 한국모태펀드(업무집행조합원 :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제14조 (조합의 존속기간) ① 조합 존속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날로부터 7년으로 한다. 다만, 미처분 유가증권이 남아 있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조합원 전체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최장 2년 범위내에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전원 동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조합은 청산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결성총회) ① 조합 결성총회는 조합원별로 설립출자금의 출자가 완료된 후 즉시 개최한다.

② 결성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본 규약의 승인
2. 사업계획의 승인
3. 제32조에 의한 투자의사결정 기구 운영방안의 승인
4. 회계감사인의 선정

③ 결성총회 결의는 전원동의로 하며, 출자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그 출자지분과 본 규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원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권리
2. 조합재산을 본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배분받을 권리
3. 기타 관련법령 및 본 규약에 의한 권리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조합원의 자격으로 지득한 내용을 조합 존속기간 중 또는 조합 존속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조합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을 의무
2. 기타 조합재산의 관리·운용에 방해되거나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제17조 (유한책임조합원의 탈퇴) ① 유한책임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하여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법인인 조합원이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 청산 또는 파산한 때
2. 개인인 조합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및 파산 선고
3. 유한책임조합원이 제1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추가출자금 출자의무를 지정납입일 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유한책임조합원이 출자 지분 전부를 양도한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탈퇴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합원총회에서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통하여 탈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합 청산시까지 탈퇴 조합원의 탈퇴 당시 출자원금에 해당하는 지분의 반환을 유보한다. 탈퇴로 인하여 유보된 출자원금은 다른 조합재산과 함께 탈퇴이후에도 투자 및 조합운영경비 등에 운용 및 사용할 수 있고, 청산시점에 평가한 가액을 업무집행조합원의 판단에 의하여 현금 및 현물로 탈퇴한 조합원에게 청산시에 지급한다.

1. 제1항 4호에 의하여 유한책임조합원 출자 지분 전부를 양도한 때
2. 유한책임조합원의 지위 승계 또는 대리가 된 경우

④ 유한책임조합원의 탈퇴 및 그 출자금의 환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당해 탈퇴하는 조합원이 부담한다.

제18조 (유한책임조합원의 제명)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유한책임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조합원 총회에서 당해 조합원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합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

2. 기타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 불이행 행위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 청산시까지 제명된 조합원의 제명 당시 출자원금에 해당하는 지분의 반환을 유보한다. 제명으로 인하여 유보된 출자원금은 다른 조합재산과 함께 제명 이후에도 투자 및 조합운영경비 등에 운용 및 사용할 수 있고, 청산시점에 평가한 가액의 50%에 상당한 금액을 업무집행조합원의 판단에 의하여 현금 및 현물로 제명된 조합원에게 청산시 지급한다. 제명된 조합원에게 지급한 평가가액의 50%를 제외한 나머지 50%는 위약벌로 하고, 동 금액은 청산시 조합원에게 청산당시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③ 조합원의 제명 및 그 출자금의 환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당해 제명되는 조합원이 부담한다.

제19조 (유한책임조합원 지위의 양도) ① 유한책임조합원이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 양도양수계획서를 첨부하여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고 조합원총회에서 일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하는 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자의 권리와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및 책임을 포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원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다른 조합원들이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우선매수권을 가진다. 업무집행조합원은 각 조합원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우선매수권의 행사를 최고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은 제52조 제2항에 따른 통지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어느 조합원이 배정된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은 당해 미취득 지분에 대하여 기존 조합원의 매수조건보다 유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다른 조합원 또는 제1항의 출자지분 양도양수계획서상 양수예정자에게 양수하게 할 수 있다. 단, 본조 제1항의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지위양도 및 우선매수권 행사여부에 대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경우 본항의 절차를 생략하고 제1항의 출자지분 양도양수계획서에 따라 출자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제20조 (유한책임조합원 지위의 승계와 대리) ① 자연인인 유한책임조합원이 사망, 피한정후견 또는 피성년후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당해 유한책임조합원의 지위를 승계 또는 대리할 수 있다.

② 법인인 유한책임조합원이 합병 또는 조직변경 등으로 새로운 법인이 발족된 때에는 그 법인이 당해 유한책임조합원의 지위를 포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 (조합원총회) ① 조합원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조합원총회는 조합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결산
2. 규약의 변경
3. 유한책임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지위의 양도
4. 조합의 해산 및 청산(조합해산계획서 포함)
5. 조합의 존속기간 연장
6. 조합의 회계감사인 선임, 변경 및 해임
7. 핵심운용인력의 변경 및 해임
8. 제32조에 의한 투자의사결정기구 운영방안의 변경
9. 기타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

제22조 (조합원총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정기총회는 사업년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임시총회는 출자약정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소집청구가 있을 때에 각각 개최하며, 업무집행조합원이 소집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해태하는 경우 특별조합원이 조합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조합원총회 소집통지는 전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하되, 총회 개최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조합원총회 의장은 업무집행조합원을 대표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특별조합원이 조합원총회를 소집할 경우 특별조합원이 지정하는 자가 조합원총회 의장이 된다.

④ 조합원총회 결의는 본 규약에서 별도로 결의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결의에 의한다.

⑤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결권은 1좌당 1개로 하되, 의결권 불통일 행사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⑥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조합원총회 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조합원총회 의사에 관하여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 진행내용과 그 결과를 기록하여 업무집행조합원 및 참석한 조합원이 기명날인한 후 모든 조합원에게 의사록 사본을 송달하고 조합 청산 완료시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⑧ 본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총회 의안에 대하여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총회를 개최하는 대신 서면결의로써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 (유한책임조합원의 감사) ① 유한책임조합원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본 조합의 재산현황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은 질문 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질문에 답변을 하거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조합원은 조합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열람·복사하는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비용은 조합의 운영비용으로 한다.

1. 조합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법령 및 본 조합 규약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2. 조합원총회 결의로 실태조사가 결정된 경우
3. 제44조에 따라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4. 기타의 사유로 특별조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4 장 조합의 운영

제24조 (업무집행조합원의 권한과 의무)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이 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 명의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이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 조합을 대표한다.

1. 조합재산의 관리·운영
 2.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 및 투자
 3. 투자업체의 육성·지원과 투자유가증권에 관한 권리의 행사
 4. 출자증서의 발행 및 교부
 5. 조합재산의 배분
 6. 회계장부 및 기타 회계에 관한 기록의 작성·유지 및 보관 등 조합의 회계처리
 7.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과 보수의 지급 등 조합채무의 변제
 8. 제1호 내지 제7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기타 본 규약에서 정하는 업무
- ② 조합이 재판상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을 민사소송법 제53조의 선정당사자로 한다.
-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근거법령 및 기타 관계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합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④ 업무집행조합원이 본 규약에 따라 그 자산운용업무가 일시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조합재산의 보전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면책 받지 아니한다.

제25조 (조합원의 책임) ① 유한책임조합원은 납입출자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납입출자금을 초과하여 본 조합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다만, 근거법령 및 관계법령 또는 본 규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조합업무의 집행결과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조합 및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 (조합운영경비) ①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합 부담으로 한다.

1. 조합재산에 속하는 투자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2.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회계감사 및 법률자문 수수료
3. 전사적자원관리(ERP)의 운영비용
4. 조합재산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수탁회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5.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소송비용
 6. 조합의 청산에 소요되는 경비
 7.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관리보수
 8. 기타 조합결정 또는 운영에 관련된 직접경비로서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거나 본 규약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경비
- ② 제1항을 제외한 업무집행에 관한 비용은 업무집행조합원의 비용으로 한다.
-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조합이 부담할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조합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 (관리보수) ① 조합은 존속기간 중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관리보수로 지급한다.

1. 조합의 성립 시기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출자약정액의 연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조합의 성립 시기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해산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투자잔액(분기말잔액, 투자원금 기준)의 연 2.0%에 해당하는 금액
3. 조합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연장시 지급할 관리보수 지급방법 및 비율 등을 정한다.
4. 조합이 제31조 또는 제54조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기간중에 해산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지급받을 관리보수 금액(이하 “누적지급관리보수”)에 제31조 또는 제54조 투자의무비율의 달성비율(제31조 : 투자액/출자약정액의 70%, 제54조 : 투자액/출자약정액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단, 산출금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과 누적지급관리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 만일, 환급하여야 할 관리보수 금액이 발생한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해산총회 개최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이하 본 호에서 “상환기간”이라 한다)에 상환하여야 한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상환기간을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상환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연 15%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토록 한다.

①과 ② 가운데 큰 금액으로 관리보수 산정

$$\textcircled{1} \text{ 누적지급관리보수} \times \left[\min \left\{ \left(\frac{\text{누적투자금액}}{\text{제31조 투자의무금액}} \right), \left(\frac{\text{누적투자금액}}{\text{제54조 투자의무금액}} \right) \right\} \right]$$

② 누적지급관리보수/2

② 관리보수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분기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분기 말에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또한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결산에 대한 조합원 총회 승인 후 지급한다. [별표3 참조]

③ 휴업·폐업된 업체, 부도, 청산 등 사실상 영업정지 상태의 투자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관리보수 산정 시, 제1항 제1호의 출자약정액과 제1항 제2호의 투자잔액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회계상 감액처리된 업체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분기부터 관리보수 산정 시 감액금액만큼 투자잔액에서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리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투자업체에 대하여 보수 미지급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미지급 사유가 해소된 다음 분기부터 관리보수를 지급한다.

⑤ 투자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으로 납입출자금액이 출자약정액의 70%에 미달할 경우 제1항 1호 및 2호의 관리보수는 조합 결성일로부터 아래의 방법으로 재 산정하여 정산한다. 재산정으로 환급하여야 할 관리보수 금액(이하 “환급관리보수”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이하 “상환기간”이라 한다.)에 상환하여야 한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상환기간을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상환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연15%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토록 한다.

환급하여야할 관리보수 금액(원미만 절사)

$$(a) \times \left(1 - \frac{\text{납입출자금액}}{\text{출자약정액} \times 70\%} \right)$$

※ (a) : 제1항 1호 및 2호에 의한 관리보수 금액

⑥ 조합원이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지정납입일까지 추가출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제10조 제3항 1호 또는 2호에 따라 지연납입 또는 제3차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출자약정액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제1항 제1호의 관리보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지정납입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출자약정액을 적용하기로 한다.

⑦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바에 따라 관리보수 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기구에서 결정되지 않은 투자자산에 대하여

해당 투자분에 대하여 관리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2. 제31조 제1항 및 제54조 제1항의 투자의무비율 및 금액 준수 등 근거 법령 또는 조합규약을 위반한 경우 조합원총회 특별결의(업무집행조합원 및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로 당해 회계연도 관리보수를 100%이내에서 삭감(기 지급한 경우 특별결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급하여 반환하며, 지연시 본 조 제5항의 연체이자 관련 규정을 준용함)하고, 이와는 별도로 특별조합원은 사유서 제출, 대표펀드매니저(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대표이사)의 면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업무집행조합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조합 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금원(부가세 제외)을 지급받는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는 해당 금액의 전액, 제5호의 경우는 해당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리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1.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와 직접 연관되어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수수료
2. 업무집행조합원의 직원이 투자대상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기타 업무감독 또는 경영자문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일체의 보수 또는 수수료
3.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상 지급받는 위약금 기타 일체의 금원
4.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자문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일체의 금원. 단, 조합원총회의 일반결의를 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공동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공동투자자 또는 공동투자를 위하여 설립된 컨소시엄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등 일체의 금원

제28조 (성과보수) ① 조합은 내부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거쳐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이하 “초과수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30을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별표4 참조] 또한, 한국모태펀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하되, 중복 적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적용한다. 단, 업무집행조합원 등에 대한 별도 성과보수의 합계는 한국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1. 전체 투자금액 대비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보통주 방식으로 신주

투자된 투자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 한국모태펀드는 한국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아래의 방법으로 산정한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신주 보통주 투자비율 40% 이상인 경우 별도 성과보수 금액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 × Max	$[(10\% \times \frac{\text{신주보통주 투자비율} - 40\%}{60\%}), 0]$

2. 전체 투자금액 대비 창업초기기업에 투자된 투자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 한국모태펀드는 한국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② 당해 조합의 기준수익률은 연 3%로 하며, 성과보수는 조합의 최종 결산시 또는 청산시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등록 후 3년 및 본 규약이 정한 투자기간이 경과하고 제31조제1항 및 제54조의 투자 의무를 달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조합의 최종 결산 이전에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정된 출자금을 모두 납입하였거나, 추가 납입하지 않기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조합원에게 배분한 누적 금액이 '배분 시점의 출자원금 및 기준수익률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달할 때까지 조합원에게 우선 배분한다.

2. 제1호에 따른 배분 후 남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준수익을 초과하는 투자수익의 100분의 30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3. 제2호에 따른 배분 후 남은 금액은 조합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성과보수의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의 운영에 참여하여 투자수익의 발생에 기여한 대표펀드매니저 등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조합재산의 관리와 운용

제29조 (조합재산의 관리와 운용의 원칙)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을 조합재산 외의 다른 재산과는 구분하여 조합명의로 관리·운용하고, 독립회계로서 장부 등 기록유지 및 시재점검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산업은행을 수탁회사로 지정하여 조합재산을 보관·관리하도록 하며, 수탁회사에 대한 운용 지시를 통해 자산을 취득 또

는 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매월 수탁회사로부터 조합재산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접수하여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ERP사용을 통해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조합의 자산운용 현황이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은 조합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을 위한 보증행위를 할 수 없다.

⑤ 업무집행조합원은 특별조합원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특별조합원에게 조합재산운용상황에 대하여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대표펀드매니저의 책임 및 핵심운용인력의 변경)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대하여 [별표 1]의 대표펀드매니저 책임 하에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표펀드매니저가 사망, 질병, 퇴사,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 또는 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제재조치 등의 사유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이를 지체 없이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대표펀드매니저를 해임·변경 선임하기 위한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대표펀드매니저 해임·변경 선임은 조합원 총회 특별결의로 한다. 단, 겸직하게 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이를 사전에 즉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대표펀드매니저 직에서 즉각 사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표펀드매니저가 변경 또는 해임되는 경우 그 변경 또는 해임시점부터 새로운 대표펀드매니저가 선임되는 시점까지 업무집행조합원의 자산운용업무(미투자자산운용은 제외)는 중단되며, 해당 기간 중 관리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조합원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규약과 근거법령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재산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대표펀드매니저 교체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대표펀드매니저 교체 및 변경은 조합원 총회 특별결의(업무집행조합원 및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지 않는다.)에 의한다.

⑤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표펀드매니저이외에 1인 이상의 핵심운용인력을 지정하여 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핵심운용인력이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적절

한 대체인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핵심운용인력의 겸직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겸직시 업무집행조합원은 이를 사전에 즉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해당 핵심운용인력은 본 조합의 핵심운용인력 보직에서 즉각 사임하여야 한다.

⑥ 핵심운용인력이 교체 및 변경되는 경우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업무집행조합원 및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지 않는다.)에 따라 당해연도 관리보수의 20%범위내에서 삭감할 수 있다. 단, 핵심운용인력의 겸직을 사전에 즉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대표펀드매니저가 겸직으로 인해 사임하는 경우(겸직 후 사임시, 겸직 시작일을 사임일로 본다)에는 당해연도 관리보수의 50%범위 내에서 삭감한다.

제31조 (투자의 방법)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2항에 따른 코넥스 시장은 제외, 이하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제5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합 등록후 3년이 경과한 다음날까지 출자약정액의 40%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기간 종료일까지 출자약정액의 70% 이상을 문화산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1.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 다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위해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한다.
2.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3. 지분의 취득.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교환사채(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수
5. 규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이 개발 또는 제작하는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의 투자(이하 “프로젝트 투자”라 한다.)

② 동일기업 및 동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한도는 출자약정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은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의 고유계정 및 운용중인 타 조합 계정, 법령에서 허용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이 투자한 업체에 대한 본 조합에서의 후행투자 등의 행위는 조합원 총회 특별결의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다만, 기존에 투자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특별결의 없이 투자할 수 있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본 조합에서 투자한 업체에 대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의 고유계정, 운용중인 타 조합 계정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이 후행투자 등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조합원총회 특별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투자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특별결의 없이 투자할 수 있다.

⑤ 업무집행조합원은 근거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합의 존속기간 내에 회수가 가능한 업체 중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심사 후 선정한다.

⑥ 조합은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구주 및 기발행한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인수방식의 투자 및 법 제17조에 따른 해외투자를 할 수 있다. 본 항과 관련된 투자는 관리보수 산정시 투자잔액에 포함한다. 단, 해외투자를 할 경우, 실제 투자사실에 관한 현지 법무법인 등의 확인서를 해외투자 집행일 이후 30일 이내에 수탁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조합은 대여금 등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의 투자 및 자산운용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투자한 투자업체에 대한 후속지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업무집행조합원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 및 실제 자금 관리자로 하여금 프로젝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장토록 하고, 프로젝트 종료 후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⑨ 투자기간 종료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없다.

1. 제32조 소정의 심의기구가 투자기간 중에 투자의사결정을 한 투자를 집행하는 경우
2. 투자기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 중에 기투자한 투자업체에 대하여 조합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
3. 조합원총회 전원동의를 얻은 경우

⑩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업체와 투자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이유로 투자계약서에서 합의된 기간 전에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행위
 2. 투자계약서에 합의된 투자금 조기회수 가능 사유로 인해 투자계약 만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통보 후 최소 2개월 이상 투자업체에게 상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업체와 합의할 경우 상환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3. 국내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최초 계약시 정한 주식 가격을 30% 이상 조정하는 행위
 4.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규 인수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투자 대상을 사실상 프로젝트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제7조의2에서 규정한 투자)로 한정하거나 프로젝트투자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을 받는 형식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 ⑪ 업무집행조합원은 유한책임조합원과 조합의 투자 내용 및 대상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경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협약 내용은 협약 체결 및 변경 전에 모든 유한책임조합원에게 공개 및 승인되어야 한다.
 2. 업무집행조합원은 업무 협약에 따른 투자를 집행할 경우 이를 심사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조합의 누적투자액 대비 업무 협약에 따른 투자금액의 비율은 전체 출자금 대비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⑫ 납입출자금은 문화산업과 관련된 분야에만 한하여 투자할 수 있다. 단, 출자약정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합의 명의로 별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자금을 통해 문화산업 이외 분야에 투자의 집행 및 회수를 할 수 있다.
- ⑬ 본 조합은 회수금(원금 및 수익)에 대한 재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정기조합원 총회에서 당해년도 재투자 가능 여부에 관하여 특별결의를 득한 경우에 한해 회수금(원금 및 수익)에 대한 재투자를 할 수 있다.
- ⑭ 제1항 제5호의 방법에 의하여 투자하는 경우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조합의 주요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제1호 라목의 기준을 따른다)이 메인투자사(투자금 관리 및 회계처리, 정산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의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누계액은 조합해산시 본 조합 전체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 이내이어야 한다.

2. 제작완료 이전 단계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6장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이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때 업무집행조합원이 보전하는 손실의 원인이 문화산업전문회사 미설립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배급하는 한국영화 프로젝트에 투자를 금지한다.(단,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제외)
 4. 원금보장 형태의 투자 또는 원금상환약정을 금지한다.
 5. 임금 체불 제작사에 투자를 금지한다.
 6. 출자자 관련 프로젝트 중 제작 완료 후 배급·유통 단계 프로젝트 투자를 금지한다.
 7. 주요 출자자가 제작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금지한다.
 8. 자조합 메인투자 시 영화·드라마 스텝 인건비는 별도계정을 설치 한다.(자조합 부분 투자시는 권고 사항)
 9. 문화체육관광부(관련 공공기관 포함)가 수립한 표준계약서(방송영상(방송영상 제작, 방송출연, 방송영상제작스태프), 영화(근로, 시나리오, 투자), 공연예술)를 적용한다. 다만,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영화는 표준계약서의 적용이 권장사항이며, 인건비 우선집행 및 최저시급을 적용을 준용한다.
 10. 공연 예술 분야 투자 시 해당공연에 대해 공연예술통합전산망(www.kopis.or.kr)에 전산화 된 예매정보(관객수 및 티켓판매금액)를 제공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 ⑮ 제1항 제5호의 방법에 의하여 한국영화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개봉일(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개봉일을 말한다) 이전 60일 이내의 투자는 제1항 후단의 투자의무비율(투자기간 종료일까지 출자약정액의 70% 이상)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2 (투자금의 실사)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금 사용목적을 투자심사보고서에 적시하여야 하며, 만일 당초 투자목적을 변경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고 특별조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피투자기업과 체결하는 투자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5 참조]

1. 투자금액 사용목적
2. 투자금액 사용처 실사
3. 투자금액 사용목적 위반시 제재방안
4. 제3자에게 자금대여 또는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한 경우(이하 “대상거래”)의 인지방안 및 발생시 처리방안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증권시장(이 항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2항에 따른 코넥스 시장을 포함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피투자업체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방법에 의하여 투자가 집행된 후 1년 이내에 회계감사인을 통하여 피투자업체가 투자금액을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사용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회계감사인의 [별표6] 투자금 실사보고서를 특별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중인 타 조합 또는 타 업무집행조합원의 조합과 공동투자한 건의 경우 해당 투자주체의 회계감사인이 투자금실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비용은 조합의 운영 비용으로 한다. 해외투자의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투자금의 적정사용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확인서(증빙자료 첨부)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업체가 투자계약서와 다른 목적으로 투자금액을 사용한 경우 자신의 판단 또는 특별조합원의 요청에 의하여 투자금액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투자업체가 투자금액을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목적으로 자금집행하기 전에 대상거래를 한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대상거래에 대한 자금출처를 파악하여 특별조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투자의사결정)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운용과 관련하여 그 내부에 투자의사결정과 관련된 심의기구(이하 “심의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조합의 자산운용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단, 제33조에 의한 자산운용 중 은행·증권회사의 확정금리부 금융상품(MMDA 포함)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업체가 발행한 주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표펀드매니저가 부의하는 안건

③ 심의기구의 구체적 시행방법은 결성총회에서 정하고,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한다.

④ 심의기구는 그 참여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결의하여야 하고, 서면결의 방법으로 결의할 수 없다.

⑤ 업무집행조합원은 심의 안건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에 의하여 개최일 5영업일 전까지 심의기구 참여자에게 근거법령 및 조합 규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준법사항체크리스트 및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송부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심사보고서에 투자기업의 각종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이자율은 연 20% 이내로 하고, 위약벌의 경우 투자금의 20% 이내로 한다. 다만, 심의기구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2항 각호의 심의가 종료된 후 업무집행조합원은 즉시 심의기구의 진행과정 및 결의내용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특별조합원에게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의2 (투자계약서의 확인)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 집행 후 30일 이내에 투자계약서(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한글번역본 포함, 이와 관련된 비용은 조합의 운용비용으로 함)를 특별조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상법 제418조 제1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투자는 예외로 한다.

② 심사보고서와 투자계약서 사이에 주요투자조건이 일치하지 않거나, 투자계약서에서 근거 법령 및 규약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에 대해 투자집행일로부터 투자잔액에서 제외한다.

③ 프로젝트 투자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원금보장 및 이율을 보장하는 등 사실상 대여성 투자의 경우에는 제31조 제1항의 투자실적에서 제외한다.

제33조 (미투자자산의 운용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수시입출금계좌를 수탁회사의 금융상품으로만 개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미투자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수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하되, 안정적 투자수요에 지장이 없도록 은행(은행법 또는 근거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증권사의 확정금리부 금융상품에만 운용하여야 하며 특별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은 수탁회사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업체가 발행한 주

식,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에 출자약정액의 20%이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

제34조 (보고 및 투자보고회)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각 조합원에게 매 반기별로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및 조합운영비용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반기마다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운영현황 및 조합운영전략 등 보고를 위한 투자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집행조합원, 대표펀드매니저 등에 대한 민형사상 피소 또는 감독기관의 제재
2.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대주주 파산, 회생절차 등의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3. 본 조합에서 20억원 이상 투자한 투자기업 및 프로젝트(또는 프로젝트 수행기업)가 투자 후 1년 이내에 휴업, 폐업, 부도, 청산 등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 6 장 조합재산의 배분

제35조 (배분대상 재산)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재산의 원천은 조합재산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과 보수 등을 공제한 잔여재산으로 하며, 각 조합원의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1. 제26조에서 정한 조합운영경비
2. 제28조에서 정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성과보수

제36조 (배분원칙) ① 조합재산의 투자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원금은 투자기간 내에는 재투자를 하거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현금으로 분배할 수 있다. 다만,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출자원금의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른 투자 의무를 달성한 경우에 배분할 수 있으며, 배분 후 출자원금은 **2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1. 규칙 제9조에 따른 방법으로 투자된 후 회수된 출자원금
2. 규칙 제9조 이외의 방법으로 투자된 후 회수된 출자원금
3. 조합 등록 후 3년 및 본 규약에서 정한 투자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투자하지 않은 출자원금

② 배분 후 출자원금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해산하여야 한다.

③ 조합청산 시까지 현금화 되지 못한 조합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전원동의에 따라 각 조합원별 배분방식을 결정한다.

제36조의2 (존속기간 만료시의 자산 처분)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존속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전에 조합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VC구주유통망'(이하 'VC구주유통망')에 자율적으로 등록하되, 6개월 전에는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 만료시 현금화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에 대해서 규약 제41조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조합원총회에서 매각조건을 확정하며, 'VC구주유통망'을 통하여 최소 3개월 이상 공고한 후 공개입찰방식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③ 'VC구주유통망'을 통해 공고하였음에도 매각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매수할 수 있다.

제37조 (손실금 배분) ① 조합 청산시까지 제26조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 금액의 합계액이 조합 납입출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당시 조합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금을 배분한다.

1. 청산 이전에 조합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분배금
2. 제17조에 의한 탈퇴 조합원에 대한 환급금
3. 제18조에 의한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환급금
4. 청산시에 조합원에게 배분할 재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손실금의 배분시기는 본 조합이 청산하는 때에 한한다.

제38조 (손실금 보전) 업무집행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규약과 근거 법령을 위반하여 조합재산의 실질가액이 감소한 경우, 그 감소한 금액 및 그에 대한 손실발생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법정이자를 손실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집행조합원이 보전하여야 한다

제 7 장 회 계

제39조 (사업연도) 조합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는 중소기업부에 등록된 날로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마지막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조합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40조 (회계원칙) 조합의 회계처리는 본 규약에서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41조 (청산시 미처분 조합재산 평가) 조합청산시 미처분 투자유가증권의 평가는 국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일 경우 분배일 30거래일 전부터 분배 직전일까지 증가평균에 의하고, 기타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일 경우 조합원 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선정된 제3자(전문평가기관)가 평가하는 가격으로 한다. 단, 해외의 증권거래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의 경우 국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투자유가증권과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 경우 통화 환산이 필요한 경우 평가일 전일 증가기준 서울 외국환중개가 고시한 기준환율을 적용한다.

제42조 (회계보고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년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에 관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 조합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총회에서 선임된 회계감사인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회계감사인은 특별조합원이 추천하는 회계법인 범위 중에서 조합원 총회 결의에 따라 선임한다.
④ 조합은 동일감사인으로 하여금 연속하는 때 5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⑤ 조합은 직전 사업연도에 당해 조합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을 해임하거나 전기감사인 이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전기감사인 및 해임되는 감사인에게 조합원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동일감사인이

조합설립일부터 투자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회계감사를 수행하여 제4항에 의하여 감사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 (회계장부 등의 열람) 유한책임조합원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회계장부, 조합재산 현황 등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무집행조합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8 장 해산 및 청산

제44조 (해산) ① 조합은 본 규약에 따라 연장되지 않는 한 조합 존속기간 만료시에 해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 전에 해산할 수 있다.

1. 조합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결성목적 달성이라 함은 제31조 및 제54조에 의한 투자의무비율 또는 금액 및 목표수익률(내부수익률 기준) 연 8%이상 달성한 경우)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탈퇴한 때
 3. 업무집행조합원이 탈퇴한 때
 4.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의 말소
 5.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의 취소, 합병, 파산 기타 다른 사유로 업무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6. 조합자산이 잠식되거나 기타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소기업부 장관이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발행된 출자좌수 과반수를 소유하는 조합원이 참석하고,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출자좌수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조합에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한책임조합원은 전원의 동의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새로운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의 존속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청산인은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은 후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조합 해산계획을 중소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청산인) 조합이 해산하는 때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의 정상적인 청산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조합원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조합원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청산인을 별도로 선임할 수 있으며,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 (청산인 직무와 권한)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사무의 종결 및 투자유가증권의 처분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분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업무
- ② 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및 재판 이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47조 (청산인 의무와 책임) 청산인은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조합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8조 (청산의 절차)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재산의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각 조합원에게 송부한다.
②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한 후가 아니면 조합재산을 배분하지 못한다. 다만,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유보하고 잔여재산을 배분할 수 있다.
③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이를 분배한다.
④ 청산인은 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단,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9 장 보 칙

제49조 (규약의 해석 및 보충) 본 규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 또는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거법령 및 관계법령과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행에 따라 해석하고 보충한다.

제50조(조합원 합의) 본 규약은 조합에 관하여 조합원들간의 최종적인 합의이며, 이 규약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조합에 관하여 조합원들간에 행해진 모든 서면 또는 구두 합의, 양해 및 보장 등은 이 규약의 발효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본 규약으로 대체된다.

제51조 (규약의 유효기간) 본 규약은 결성총회에서 승인받은 날로부터 조합 청산완료일까지 유효하다.

제52조 (통지) ① 본 규약에 따른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하며, 우편, 직접교부, 팩시밀리, 전자우편 기타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통지의 효력발생은 원칙적으로는 우편의 경우 발송일로부터 5영업일 후, 직접 교부시는 교부일에, 팩시밀리 및 전자우편의 경우는 전송시점으로부터 24시간 후에 수령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통지의 효력발생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통지는 별도의 변경 통지가 없는 한, 아래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사무소로 하여야 한다.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22, 508호

(삼성동, 한국도심공항터미널)

우편번호 : 06164

전 화 : (02)516-4171

F A X : (02)516-4174

전자우편 : sykim@leoi.co.kr

제53조(외국인 조합원에 대한 특칙) ① 외국인조합원은 필요하다면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신고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외국인인 조합원은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 규약 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작성되는 서류가 한국어와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 양자간 모순 또는 상위가 있을 때에는 한국어로 작성된 규약 또는 서류가 우선한다.

제54조(기타 특약사항)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에 제31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투자기간 이내에 출자약정액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투자비율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1. 출자약정액의 70% 이상을 원천IP, 문화콘텐츠 초기기업 등 문화산업 전반에 소액투자 하여야 하며, 건당 투자액은 5억원 이내로 한다. 단, 업체당 총 투자액은 20억원 이내로 제한한다. 원천IP란, 소설·웹툰 등 다분야로의 활용이 가능한 1차 창작 콘텐츠를 의미한다.
2. 본 조합에서 기 투자한 원천IP를 활용하여 만든 콘텐츠에 프로젝트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도 금액에 상관없이 소액투자자로 인정한다.
3. 서울 소재 콘텐츠(애니메이션, 만화 웹툰, 게임, 캐릭터, MCN) 관련 중소벤처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서울산업진흥원 출자금의 20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서울 소재 기업은 본사, 공장, 연구소, 사무소, 지점, 영업소 등이 서울에 소재한 기업으로 투자 후 1년 이내 서울 소재 이전에 예정 기업을 포함한다.

② 본 조합의 핵심운용인력이 신규로 결성되는 조합의 핵심운용인력으로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대표펀드매니저는 본 조합의 투자누계액이 출자약정액의 70%이상이 되기 이전에는 신규로 결성되는 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될 수 없다. 단, 본 조합의 투자누계액이 출자약정액의 70%이상이 되기 이전이라도 신규로 결성되는 2개의 조합에 한하여 본 조합과 신규로 결성되는 조합의 출자약정액 합계가 1,0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 조합 대표펀드매니저는 신규 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될 수 있으며, 본 호의 사항은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 결성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운용인력의 경우 개인별 조합 운용금액이 1,0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운용인력의 개인별 조합 운용금액 한도
 $\Sigma(\text{펀드규모}/\text{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운용인력 수}) < 1,000\text{억원}$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특별조합원이 출자하여 결성한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들로 구성하는 협의회 및 기타회의 참석
2. 투자성과 자료 공개 및 이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 제공
3. 특별조합원이 기타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특별조합원은 조합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중요한 상황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업무집행조합원 및 조합에 대하여 사전 협의된 내용을 전산 또는 서면으로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업무집행조합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특별조합원은 심의기구에 상정된 투자안건에 대해서 유한책임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 특별결의(업무집행조합원 및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지 않는다.)에 따라 투자 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조합이 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별 납입한 금액은 원리금을 포함하여 해당 조합원들에게 즉시 환급된다. 이와 같이 출자금액이 당해 조합원들에 환급되는 경우 본 조합규약은 해지된다.

⑦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규정 제4조의2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분기별 투자금액 및 투자업체 수
2. 조합의 감사보고서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약은 결성총회에서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타 핵심운용인력 인적사항

대표 펀드매니저 인적사항

성명(국문) : 신 문 철
성명(영문) : Shin Moon Chul
생년월일 : 1975년 8월 6일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254, 104동 304호(이태원동)
연락처 : 02-516-4171
주요이력 및 경력 :
한국영상투자개발 영화팀
(주)미디어플렉스 마케팅팀
아스텍창업투자(주) 투자심사역
우리들창업투자(주) 투자팀장
지온인베스트먼트(주) 투자팀장, 기획관리팀장
(現)(주)레오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투자팀 이사

성명(국문) : 한 석 우
성명(영문) : Han Suk Woo
생년월일 : 1965년 2월 20일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34길 109, 501호(방배동)
연락처 : 02-516-4171
주요이력 및 경력 :
일신창업투자(주), 책임심사역
엔피아(주), 대표이사
유니슨벤처(주), 부사장
(주)네오위즈인터넷, 대표이사
지온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現)(주)레오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성명(국문) : 허 인 선
성명(영문) : Heo In Sun
생년월일 : 1982년 10월 1일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175, 604동 605호(가양동)
연락처 : 02-516-4171
주요이력 및 경력 :
대우건설 해외영업팀 사원
(現)(주)레오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투자팀 심사역

< 별표 2 >

조 합 원 서 명 란

업무집행조합원

성명 : (주)레오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한 석 우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22, 508호(삼성동,한국도심공항터미널)

출자좌수 : 40좌

유한책임조합원

성명 :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6(논현동, 8층)

출자좌수 : 150좌

유한책임조합원

성명 : (주)로엔엔터테인먼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03길 17(삼성동, 정석빌딩)

출자좌수 : 150좌

유한책임조합원

성명 : 메가박스(주)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56, 2,3층(논현동, 제이콘텐츠리빌딩)

출자좌수 : 120좌

유한책임조합원

성명 :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출자좌수 : 50좌

특별조합원

성명 : 한국모태펀드

(업무집행조합원 한국벤처투자(주))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서초동)

출자좌수 : 1,000좌

< 별표 2 > - 조합원별 일괄 서명이 어려운 경우

조 합 원 동 의 서

본인은 ○○조합의 규약과 사업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바, 본 규약을 수락하고 동의서에 기명날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상호) : (인감날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출자좌수 : 좌

○ ○ 조합
업무집행조합원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귀하

관리보수 산정방법 예시

*) 본 예시는 관리보수 산출방법, 지급시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개별 조합별 구체적인 관리보수 금액, 지급시기 등은 규약 본문에 기재되어 있는 조합의 출자약정액, 결성일, 만료일, 관리보수 지급방법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됩니다.

□ 관리보수 산출을 위한 기본 가정

- 출자약정액 : 200억원
- 조합 결성일 : 2017년 10월 15일
- 조합 결성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 2020년 10월 14일
- 투자기간(조합결성일로부터 4년 가정) 종료일 : 2021년 10월 15일
- 조합 존속기간 만료일 : 2024년 10월 14일
- 관리보수 지급방법
 - 가. 투자기간 동안 : 조합출자약정액의 2.5%
 - 나. 투자기간이 경과한날 부터 해산시까지 : 투자잔액(분기말잔액, 투자원금기준)의 2.5%
- 2020년 10월 15일 이후 매 분기말 투자 잔액
 - 가. 2020년 12월 31일 : 150억원
 - 나. 2021년 매 분기말 투자 잔액

구 분	2021년3월31일	2021년6월30일	2021년9월30일	2021년12월31일
투자잔액	140억	120억	120억	100억

다. 2024년 매 분기말 투자잔액

구 분	2024년3월31일	2024년6월30일	2024년9월30일	2024년10월14일
투자잔액	100억	80억	60억	20억

□ 2017년 4/4분기 관리보수 지급대상 금액 산정방법

- 출자약정액(a) : 200억원
- 관리보수율(b) : 2.5%
- 경과일수(c) : (2017년 10월 15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78일
- 총일수(d)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65일
- 경과일수 고려한 관리보수 : $(a*b*c/d)$ 1.07억원
- 지급시기 : 2017년 12월 31일 이후

□ 2018년~2020년 3/4분기까지 매 분기별 관리보수 지급대상 금액 산정방법

- 출자약정액(a) : 200억원
- 관리보수율(b) : 2.5%
- 분기 고려(c) : 1/4
- 매 분기별 관리보수 : $(a*b*c)$ 1.25억원
- 지급시기 :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이후

□ 2020년 4/4분기 관리보수 지급대상 금액 산정방법

2020년 10월1일부터 2020년 10월14일까지 관리보수 지급대상 금액 산정 (A)- 출자 약정액기준

- 출자약정액(a) : 200억원
- 관리보수율(b) : 2.5%
- 경과일수(c) : (2020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14일까지) 14일
- 총일수(d)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66일
- 경과일수 고려한 관리보수(A) : $(a*b*c/d)$ 0.19억원

2020년 10월 1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리보수 지급대상 금액 산정(B)- 투자 잔액 기준

- 경과일수 감안 2020년 12월 31일 현재 투자 잔액(a): (아래 수식 참조) 127.17억원
- 관리보수 지급대상 금액(b) : $(a/4)$ 31.79억원
- 관리보수율(c) 2.5%
- 경과일수 고려한 관리보수 : $(b*c)$ 0.79억원
- 2020년 4/4분기 관리보수 금액(A+B) : 0.98억원
- 지급시기 : 2020년 결산 조합원 총회 종료 후

<경과일수 고려한 2020년 12월 31일 투자 잔액(a)산정 방법>
 2020년 12월 31일 현재 투자 잔액(150억원) × $\frac{2020년 10월 1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과일수(78일)}{2020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분기 총일수(92일)}$

□ 2021년 관리보수 지급대상 금액 산정방법

구 분	2021년3월31일	2021년6월30일	2021년9월30일	2021년12월31일
투자잔액	140억(a)	120억(b)	120억(c)	100억(d)

- 연간 분기 평균 잔액 (h) : $(a+b+c+d)/4$ 120억원
- 관리보수율(i) : 2.5%
- 연간관리보수(j) : 3억원
- 지급시기 : 2021년 결산 조합원 총회 종료 후

※ 2022년 ~ 2023년 관리보수 지급대상 금액 산정방법은 2021년 산정방법과 동일

□ 2024년 관리보수 지급대상 금액 산정방법

구분	2024년3월31일	2024년6월30일	2024년9월30일	2024년10월14일
투자잔액	100억(a)	80억(b)	60억(c)	20억(d)
경과일수				3.04억(d')
고려투자잔액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관리보수 산정

- 경과일수 고려 연간 분기 평균 잔액 (h) : $(a+b+c+d')/4$ 60.76억원
- 관리보수율(i) : 2.5%
- **연간관리보수(j)** : **1.519억원**
- 지급시기 : **해산총회 종료 후**

<경과일수 고려 2024년 10월14일 투자잔액(d')산정 방법>

2024년 10월14일 현재 투자 잔액(20억원) × $\frac{2024년 10월1일부터 2024년 10월14일까지 경과일수(14일)}{2024년 10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분기 총일수(92일)}$

[별표4]

성과보수 산정방법 예시

*) 본 예시는 성과보수 산정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개별 조합별 구체적인 성과보수 금액 등은 실제 출자금 납입일 및 실제배분일, 배분금액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 성공보수 산출을 위한 기본 가정

- 약정총액 : 300억원
- 기준수익율 : 7%
- 성과보수 : 기준수익율 초과분의 20%

□ 출자금 납입 및 배분예시

내역	일자	경과 일수	출자금	기준수익	배분가능 금액	실배분 금액	성과보수 차감후 배분금액	비고
설립출자금	07-07-01		-10,000,000,000					
1차출자금	07-12-01	153	-6,000,000,000	-16,287,670,254				주1)
2차출자금	08-05-30	181	-4,000,000,000	-20,843,413,168				주2)
분배금	09-07-01	397		-22,435,137,063	30,000,000,000	22,435,137,063		주3)
3차추가분배금	09-12-31	183	-10,000,000,000	-10,000,000,000	8,000,000,000	8,000,000,000		주4)
분배금	10-05-30	150		-2,056,390,177	7,000,000,000	7,000,000,000	6,011,278,035	주5)
분배금	12-06-30	762			5,000,000,000	5,000,000,000	4,000,000,000	주6)

□ 산정내역

주1)

- '07.12.01 : 기준수익=설립출자금('07.7.1)에 대한 1차 추가출자일 까지 153일간 연7% 복리계산금 + 1차 추가출자금
= {100억원*(1+7%)^(153/365)}+60억원

주2)

- '08.05.30 : 기준수익='07.12.01일자까지의 기준수익에 대한 2차 추가출자일까지의 연 7%에 대한 복리계산금+3차 추가출자금
= {16,287,670,254*(1+7%)^(181/365)}+40억원

주3)
- '09.07.02일자 현재 기준수익보다 배분가능금액이 크나 출자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최대 기준 수익까지만 배분

주4)
- '09.12.31 : 3차 추가출자금 100억원을 출자하고 동시에 배분가능금액 전액을 배분. 기준수익보다 배분가능금액이 적으므로 초과수익 없음

주5)
- '10.05.30 : 기준수익=직전 분배일인 '09.12.31일에 출자금과 배분금액을 차감한 20억원에 대해 '10.05.30일까지 150일간 연7% 복리계산금
- 당일 배분가능액 70억원은, 출자금 납입의무가 완료된 시점이므로 모두 배분가능하며 배분금액이 기준수익을 초과하므로 초과수익의 20%를 성과보수로 지급
 기준수익 = 2,056,390,177원(조합원지분에 따라 배분)
 성과보수 = 988,721,965원(초과수익 4,943,609,823원의 20%)
 성과보수 차감후 배분금액 = 6,011,278,035원(조합원지분에 따라 배분)

주6)
- '12.06.30 : 직전배분일에 이미 기준수익을 초과하여 배분하였으므로 배분가능액 모두 초과수익으로써 성과보수 20%차감 후 조합원지분에 따라 배분

운용수익률 = 24.28 %

- 수익률을 산정하기 위하여 Excel상 함수인 Xirr을 사용한다.

[별표5]

투자금 실사관련 투자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예시

*) 본 예시는 업무집행조합원과 피투자기업이 체결하는 투자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투자금 실사관련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시1) 투자금 사용목적

피투자기업은 본 계약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음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당초 체결한 투자계약서의 투자금 사용목적에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
2. -----

주) 사용목적 예시

- 적외선 필터 양산을 위한 클린룸 설치
-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 해외법인 설립 등 해외시장 진출비용 등

(예시2) 투자금 사용목적 위반시 제재방안

피투자기업이 투자금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투자자는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가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피투자기업은 투자자에게 투자금액 및 이에 대하여 납입기일로부터 본 계약해지일까지는 투자금액의 연 0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투자금액의 연 0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예시3) 투자금액 사용처 실사

피투자기업은 투자자의 요청으로 투자자가 지명하는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투자금 납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금액 사용처 실사를 받아야 한다.

(예시4) 대상거래 인지방안

피투자기업은 제3자에게 자금대여 또는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시행일로부터 00일 이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금의 사용내역을 매월(분기별) 투자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시5) 대상거래 발생시 처리방안

“예시2” 참조

[별표6]

투자금 실사보고서(서식)

<표지>

**투자조합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자금 실사보고서
 ****년 **월 **일

실사자: **회계법인
 보고자: 업무집행조합원 **창업투자

<내용>

I. 일반사항

투자자	업무집행조합원	**창업투자(주)
	투자조합명	*****투자조합
	투자일자	20**년 **월 **일
	투자금액	**만원
	투자방식	상환우선주(*,**주)
피투자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II. 투자금 사용목적

투심위보고서	투자계약서	비고
1. ***	1. ***	
2. ***	2. ***	

III. 투자금의 집행내역

1. ***

(단위: 원)

구분 비목	계획 (A)	사용금액 (B)	잔액 (C)	집행비율(% (B/A)×100
1. ****				
- ***				%
2. ****				
- ***				

주) 필요 시 세부 집행 내역 기술

2. ***

(단위: 원)

구분 비목	계획 (A)	사용금액 (B)	잔액 (C)	집행비율(% (B/A)×100
1. ****				
- ***				%
2. ****				
- ***				

주) 필요 시 세부 집행 내역 기술

IV. 대상거래 발생여부

* 투자금을 제3자에게 자금대여 또는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기재

V. 종합의견

회계법인별 내부 표현 방식에 따라 실사의 대상, 실사의 한계, 실사 종합의견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을 간략히 기재함.

20**년 **월 **일
 ****회계법인
 담당사원 공인회계사 홍길동 (인)